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444

발의연월일: 2024. 9. 30.

발 의 자:서지영·서천호·김선교

이헌승 · 성일종 · 김소희

김대식 • 이인선 • 최은석

김승수 · 곽규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립대학에 설치되는 재정위원회는 국립대학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일반직위원은 해당대학의 교원·직원·재학생과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등 중에서국립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최근 정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정책 등의 사례를 보면, 지역대학 육성과 지역·대학의 동반 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에 소재한 국립대학 간의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는 대통령령 이상에 근거가 있어야 처리 가능하나, 동법 시행규칙에 고유식별정보 의 처리 근거가 있어 재정위원회 위원 구성 시 결격사유 조회에 대한 처리 근거가 미흡함.

이에 국립대학 소재지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국립대학의 재정위원회에 일반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과 대학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3호 및 안 제10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대학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 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한 사람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위원회의 위원이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 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직위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일반직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재정위원회의 설치・운영)	제8조(재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재정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③
재정ㆍ회계규정으로 정하고, 일	
반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정・회계규정으로 정	
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국립대	
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일반직위원은 제1호에	
따른 교원, 직원, 재학생을 각	
각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대학의 장은 일반직위원	
이 될 수 없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해당 대학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u>•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u>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추
	천한 사람
<u>3.</u> (생 략)	<u>4.</u> (현행 제3호와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1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위원회의

위원이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 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